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 송정빈 의원
- 나. 의안번호 : 제2260호
- 다. 발의일자 : 2021.03.24
- 라. 회부일자 : 2021.04.06

2. 제 안 사 유

- 상수도사업본부 내 감사 또는 조사기능 마련에 대한 대내외적인 요구에 따라 본부장 직속으로 안전조사과를 설치(2021.1.1.)한 바 있으나, 조례에 안전조사과에 관한 업무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안전조사과의 자체조사 업무 수행에 관한 근거와 그 업무범위를 조례에 규정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상수도사업본부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투명하고 공정을 윤리경영을 수행하기 위해 자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신설)
- 나. 자체조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4. 참 고 사 항

- 가. 관련 법령 : 「지방공기업법」
- 나. 예산 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사업본부 내 안전조사과 설치에 따른 자체 조사 업무 수행에 관한 근거와 그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현황

- 상수도사업본부는 1989년 설립 당시부터 감사과를 두고 운영해왔으나 지난 2004년 3월에 이르러서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이 행사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권 및 처분권 등을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하였음.
-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의 감사 기능이 전문성과 독립성 부족으로 소속 공무원의 감사·조사 사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4년 5월 감사과를 폐지하고 서울시 감사담당관으로 통합¹⁾하도록 동 사무의 위임을 시장권한으로 다시 변경된 바 있음.

<상수도사업본부 감사부서 운영연혁>

구 분	내 용
'89.11.21.	총무과 감사과(상수도사업본부 발족당시 신설)
'93.07.16.	총무과 조사과(명칭변경)
'04.03.30.	사무위임조례 개정으로 징계요구권 확보
'05.01.05.	총무부 감사과(명칭변경)
'07.10.01.	부분부장 직속 감사과(조직개편)
'14.05.14.	감사과 폐지(사무위임 환수 조치)
'21.01.01.	안전조사과 신설(본부장 직속)

1) 본청 감사담당관 내 상수도사업본부 전담팀 신설하여 정원 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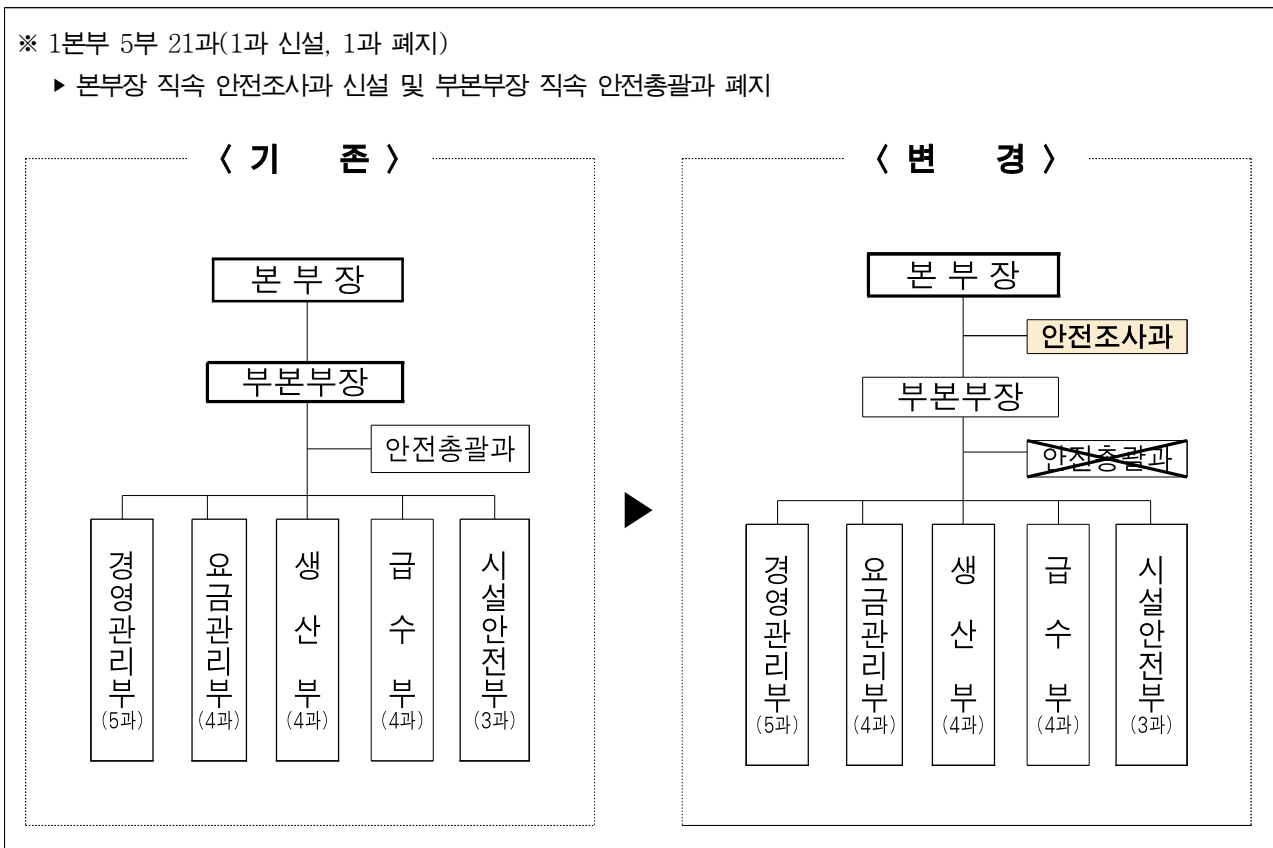
2) 안전조사과 신설에 따른 조례 근거 마련

- 상수도사업본부는 소속 관리인력이 1,900명이 넘는 규모의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안전감사만 받고 있으며, 2014년 감사과 폐지 이후 자체 감사기능 부재로 인해 형식적인 사후관리 조치만 이행하고 있어 감사기능 부활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왔음.
-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020년 8월 안전감사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계획을 마련하였고 금년 1월 직제 개편을 통해 안전조사과를 신설하였지만, 동 조례에 자체조사 수행에 대한 근거 및 업무범위 등을 규정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업무수행이 어려운 실정임.

<상수도사업본부 직제개편(2021년 1월)>

※ 1본부 5부 21과(1과 신설, 1과 폐지)

▶ 본부장 직속 안전조사과 신설 및 부분부장 직속 안전총괄과 폐지



-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서 지방직영기업의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9조제10호에서는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가 직영기업 내 조직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업무범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례에 안전조사과 신설에 따른 자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²⁾하고, 실효성 있는 업무수행을 위해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특히, 안전조사과라는 내부적인 견제장치를 통해 문제 발생 시 보다 신속한 현장의 대응능력과 사전 예방효과 등 자체 감사기능으로서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과거 상수도사업본부 감사과의 전문성과 독립성 부족으로 인해 서울시로 권한이 환수되는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안전조사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와 독립성은 지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임.

2) 지방공기업의 자체조사를 위해 조례 내 규정 신설 가능 여부에 대해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모두 가능하다는 의견임.

감사원 : 안전조사과 자체조사 관련 법령 제·개정(안)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상충되지 않음
행정안전부 : 「지방공기업법」 제9조제10호에 따르면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가 직영기업 내 조직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업무범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자체조사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체조사 관련 규정을 해당 조례에 신설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조사의 범위는 직무에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해야 함.